



# 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요건표



구분	공제요건				비고	
	나이요건*	소득요건*	동거요건			
			주민등록동거	일시퇴거 허용		
기본공제	본인	×	×	×		
	배우자	×	○	×		
	직계존속	60세 이상	○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	1964.12.31. 이전	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	○	×	2004. 1. 1. 이후	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	×	○	×		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○	○	○	1964.12.31. 이전 2004. 1. 1. 이후
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×	○	○	○	
	위탁아동		○			
추가공제	장애인	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				
	경로우대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			1954.12.31.이전	
	부녀자	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				
	한부모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				
연금보험료 공제	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	

\* **나이요건**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
\* **소득요건**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

구분	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	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	비고		
	나이요건	소득요건				
특별 소득공제	보험료	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(건강·노인장기요양·고용보험료)				
	주택자금공제	-	-	○	본인만 가능	
그 밖의 소득공제	개인연금저축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		
	주택마련저축	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	
	신용카드 등	×	○	○	형제자매 제외	
자녀세액공제 (8세이상)		○	○	-	기본공제대상 자녀 (입양자·위탁아동·손자녀 포함)	2016.12.31. 이전
연금계좌세액공제	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		
특별 세액공제	보장성보험료	○	○	○		
	의료비	×	×	○		
	교육비	×	○	○	직계존속 제외 *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가능	
	기부금	×	○	×	기본공제대상자 * 정치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	
표준세액공제		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				